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12 발의연월일: 2024. 9. 13.

발 의 자:김도읍・주진우・윤한홍

조승환 · 구자근 · 이성권

김소희 · 장동혁 · 권영세

김정재 • 이헌승 • 김형동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,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,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.

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, 입주자에 대한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이미흡한 실정임.

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

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제10조의5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5(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 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에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 7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0조의5(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에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요원의 배치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